

제375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처리결과



장성군의회

심사결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708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709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2710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711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5	2712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713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715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	271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장성소방서 북이119 지역대 청사신축)	원안가결
9	2717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2640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채택
11	2718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원안채택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6. 1. 8.
- 발의자 : 차상현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에 관한 담당업무가 일부 미정비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아울러 개정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입안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팀장 등) 정비

조	제명	개정대상	비고
1조	장성군의회 장에 관한 조례	제6조	
2조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3조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6. 1. 14.
- 발의자 : 심민섭 의장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중복지원 제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2026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통보에 따른 국가·지역 현안 사업 등 정원반영으로 업무부담 해소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715명 → 735명 (증 20명)
 - 직종·직급별 정원증원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715	371	17	105	46	176
개 정	735	373	18	107	46	191
증 감	+20	+2	+1	+2	-	+15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교육과장)

- 제안이유

-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개편(2025.1.1.)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운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 또한, 조례에 규정된 집성관 관련 사항이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교육과장)

- 제안이유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의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기존 유물전시관 운영 조례를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집성관의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현행)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집성관 재개관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건강증진과장)
- 제안이유
 - 기본사회의 발전적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한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
 - 현행 조례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가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모두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 모두 도내 거주 요건 미인지 및 부모 중 1인 미전입 상태로 출생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이에 따라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기본사회 시대상 반영을 위해 출생 기본수당을 출생 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보호자(부모 모두)의 도내 거주조건 충족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 보호자 1인은 출생아동과 함께 계속해서 도내 거주, 다른 보호자 1인은 수당 지급 신청 시기부터 도내 거주 조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최미화 의원 외 1
- 제안이유
 - 농어촌민박의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위생·안전·시설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강화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및 실태조사 등(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신청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심의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안 제10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 안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장성소방서 북이119지역대 청사 신축)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북부(북일·북이·북하면) 지역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긴급 대처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이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 장성소방서 북이119 지역대 청사 신축
- 대상지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76-94
- 사용면적 : 총 3,998m² 중 2,000m²
- 소유자 : 장성군수
- 사용자 : 전라남도지사
- 허가조건
 - 허가일로부터 5년(소방관서 폐쇄 시까지 5년마다 연장)
 - 공용사업용으로 신축부지 사용료 면제
 - 사용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사용조건 변경 시 장성군수 승인
 - 유지·관리상의 하자나 문제 발생 시 비용은 전라남도지사 부담
 - 사용기간 종료 시 최종 사용허가 상태로 반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장)

- 제안이유

- 어르신 택시 바우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통비 지원 연령 확대(안 제7조제5호)
 - (현행) 80세 이상
 - (개정) 75세 이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발의일자 : 2025. 8. 29.
- 발의자 : 최미화 의원 외 1
-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 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보훈수당은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지역간 최대 5배 이상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명확한 법적·제도적 추진체계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과 보훈수당 지급의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과 적절성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는 보훈정책의 각 지방자치단체간 차별을 해소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의결결과 : 원안채택

11.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 발의일자 : 2026. 1. 16.
- 발의자 : 나철원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 관내 신장성분기T/L, 신장성-신정읍T/L, 신해남-신장성T/L 등 총 7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삼계·삼서·동화 등 생활권에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이 중첩·분산 배치될 우려가 커 산림·경관 훼손, 농업활동 제약, 재산권 침해, 주거·정주환경 악화 등 주민피해와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군민의 생존권·건강권·정주권을 보호하고 갈등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신장성 변전소를 제외한 장성군 관내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주민참여·동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부와 한전은 형식적인 입지선정 및 주민동의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권이 보장되도록 법령·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
- 정부는 전력생산지 및 전력설비 인접 지역에 반도체·AI 산업·첨단 제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의결결과 : 원안채택